

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
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이규선 의원 발의】



2020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37호로 2020년 6월 5일 이규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(안 제4조)
- 나. 지원(안 제5조)
- 다.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(안 제6조)
- 라. 인권 교육 및 홍보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 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0. 6. 5. ~ 6. 9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
 -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 -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
 - 안 제7조에서는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·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.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비원의 근무 공간 등 시설 개선,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보 제공 등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

공동주택관리법

제65조(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) ① 입주자대표회의(구성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,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,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